#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(민형배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0414 발의연월일: 2025. 5. 8.

발 의 자 : 민형배ㆍ이개호ㆍ정동영

박지원 · 장경태 · 김동아

김성환 · 김현정 · 안도걸

양부남 · 양문석 의원

(11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대법원 판결도 헌법소원심판 대상에 포함하고자 합니다. 재판도 공 권력이며, 헌법에 반하는 판결은 당연히 헌법적 통제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.

현행 헌법재판소법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할 경우,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 문제는 국가의 공권력 범위에 '입법권'과 '행정권'을 포함하면서 '사법권'만은 제외하고 있다는 점입니다. 사법판단으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이를 다툴 수 있는 헌법적 구제 수단이사실상 차단되어 있습니다.

오래전부터 많은 법학자들이 기본권 구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재판소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해 왔습니다. 독일 등 법치주의 선진국에서

는 '재판에 대해서도' 헌법소원을 허용하고 있습니다. 이와 같은 국제적 기준에 비추어 보더라도, 우리 헌법소원제도는 개선이 시급합니다.

이에,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헌법을 명백히 위반해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,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. 실질적 법치주의 구현과 기본권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(안 제68조 등).

법률 제 호

##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

헌법재판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8조제1항 본문 중 "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"를 "헌법재판소에"로 하고, 같은 항 단서 중 "청구할 수 있다"를 "청구하여야 하며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재판이 확정된 뒤 확정된 재판을 대상으로 청구하여야 한다"로 한다.

제69조제1항 단서 중 "청구하여야 한다"를 "청구하여야 하며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"로 한다.

제71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제68조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이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심판청구서에 재판서 및 그 확정증명원을 첨부하여야 한다. 제75조제6항 중 "제68조제2항에"를 "제68조에"로 한다.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재판소원에 관한 적용례)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

확정된 재판의 경우부터 적용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혅 행 개 정 아 제68조(청구 사유) ① 공권력의 제68조(청구 사유) ① ----행사 또는 불행사(不行使)로 인 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-----<u>헌법재판소</u>에--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. 다 만,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 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. -----청구하여야 하며 법 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재판이 확정된 뒤 확정 된 재판을 대상으로 청구하여 야 한다. ② (생 략) ② (현행과 같음) 제69조(청구기간) ① 제68조제1항 제69조(청구기간) ① -----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,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. 다만,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 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부 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 -----청구하여야 하 다.

- ② (생략)
- 제71조(청구서의 기재사항) ① ~ 제71조(청구서의 기재사항) ① ~ ③ (생략) <신 설>

- 제75조(인용결정) ① ~ ⑤ (생 략)
  - ⑥ 제5항의 경우 및 제68조제2 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인용하 는 경우에는 제45조 및 제47조 를 준용한다.
  - ⑦・⑧ (생 략)

- 며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 원의 심판은 그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.
- ② (현행과 같음)
- ③ (현행과 같음)
  - ④ 제68조제1항에 따른 헌법소 원이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심판청구서에 재판 서 및 그 확정증명원을 첨부하
- 제75조(인용결정) ① ~ ⑤ (현행 과 같음)
  - ⑥ -----제68조에-
  - ----.

여야 한다.

(7)·(8) (현행과 같음)